

주거확보급부금 안내

휴업 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주거지를 잃을 우려가 생긴 분들에게 **원칙적으로 3개월, 최대 9개월** 분의 **월세 상당액을 지자체에서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2020년도에 신규신청하고 수급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자

- 실직 · 폐업한지 2년 이내의 분
- 휴업 등으로 수입이 줄어 주거지를 잃을 우려가 있으신 분

재지급

- 주거확보급부금 수급기간이 끝난 분은 **3개월 한정으로** 재지급이 가능해집니다.
- 재지급 (최장 3개월) 신청기간이 **2022년 3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주거확보급부금과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말까지**입니다.

기타 개별 요건 등이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거주지 자립상담지원기관으로

<https://www.mhlw.go.jp/content/000614516.pdf>

스마트폰 · 태블릿은 이곳 클릭→





자주하는 문의

Q.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와 비슷한 정도」란 어느 정도입니까?

A.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이유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나, 취직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예 1) 스포츠센터가 일정기간 휴업함에 따라 주 4~5일의 근무일수가 주 2~3일 정도로 줄어든 스포츠센터 스태프
- (예 2) 외국인 참여가 예정돼 있던 2주간의 이벤트가 확산방지대책에 의해 중지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프리랜서 통역사
- (예 3)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 악화로 한개 사업장이 휴업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든 사람
- (예 4) 확산방지대책으로 인해 숙박 취소가 잇따른 숙박업 종사자

상기는 예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와 비슷한 정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고용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의 단축을 알 수 있는 고용자 발급용 시프트표 등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점포의 영업일이나 영업시간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급계약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발주 취소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특례대출을 받고 있는 서류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수입이 줄었습니다. 거주확보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은 자의적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현재의 취업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에 더해 예컨대 아르바이트 등의 단시간 고용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일을 그만 둘 필요는 없습니다.